

보도시점 2025. 6. 26.(금) 06:00  
6. 26.(금) 석간

배포 2025. 6. 25.(목) 14:00

##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

-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 또는 농업e지([www.nongupez.go.kr](http://www.nongupez.go.kr))로 신청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보전직접지불금(이하, ‘FTA 직불금’)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,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·농업법인(이하, 농업인 등)에게 기준가격\*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% 범위에서 수입기여도\*\*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.

\* 기준가격 :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× 90%

\*\* 수입기여도 :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

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D) ‘FTA이행지원센터’를 통해 총 105개\*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, 대외 의견수렴(2026.5.14.~2026.6.4.)과 생산자단체·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‘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(2026.6.15.~2026.6.19.)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염소고기를 결정하였다.

\*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, '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

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·호주 FTA 발효일 \*('14.12.12.)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이며,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, 온라인(농업e지, www.nongupez.go.kr)으로 신청하면 된다.

\*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제1항

신청기간(7.2.~8.3.)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·현장 조사를 실시하고,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·접수 및 지급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.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실 농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혜영 (044-201-17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희 (044-201-1719)



- (취지)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(FTA 농어업법 제6조1항)
- (지원대상품목)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,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(시행령 제4조2항1호)
- (지급기준)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(법 제7조1항)
  - (가격) 협정의 이행으로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% 미만으로 하락
  - (총수입량)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
  - (수입량)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\* 초과
    - \*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× 수입피해발동계수
- (농가당 지급액) [‘25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] × [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] × 지급단가 × 조정계수
  - ※ (상한액) 농업인 3천500만원, 농업법인 5천만원
  - (지급단가) 기준가격\*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%
    - \*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× 0.9
  - (조정계수) = (지급 가능 보조액/지급 신청 총액) × 수입기여도\*
    - \*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(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·분석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, 법 제8조1항)
- (시행기간) 한·중 FTA 발효일(‘15.12.20)부터 15년(법 제6조)